

대전지방법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111817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2	작성 일자	2026. 1. 30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오충렬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		최선순위 설정	2024. 6. 14. 강제경매개 시결정		배당요구종기	2024. 9. 19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조사된 임차내역없음										
<p><비고>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해당사항없음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 <p>해당사항없음</p> <p>비고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시의 수목 중 소나무만 매각에 포함하고, 나머지 수목은 매각에서 제외함 - 지적도상 맹지이나, 현황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임 - 지분매각,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(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,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 우선매수권 행사를 할 수 없음) -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(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),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111817

[물건 2]

2.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331-1
전 1815m²

제시외 2-1 수목 소나무 250주
2-2 수목 오가피나무 10주
2-3 수목 주목 2주
2-4 수목 영산홍 1주
2-5 수목 감나무 4주
2-6 수목 대추나무 5주

매각지분 공유자 박기춘 지분 10분의 7 전부

감정평가액		58,307,75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3.04	14,000,000	1,400,000
2회	2026.04.08	9,800,000	980,000
3회	2026.05.13	6,860,000	686,000
4회	2026.06.17	4,802,000	480,200

- 제시외 수목 중 소나무만 매각에 포함하고, 나머지 수목은 매각에서 제외함
- 지적도상 맹지이나, 현황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임
- 지분매각,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(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 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,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 우선매수권 행사를 할 수 없음)
-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(매각결정기일까지 미 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),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